

#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희원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31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6일

발 의 자: 이희원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  
곽향기, 김경훈, 김규남,  
김동욱, 김원중, 김혜지,  
문성호, 박상혁, 서상열,  
송경택, 윤영희, 이민석,  
이봉준, 이은림, 이종배,  
이효원, 정지웅, 최민규,  
최진혁, 황철규 의원(23  
명)

## 1. 제안이유

- 현재 마약류 관련 범죄가 일부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연령층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재범률이 높아지면서 중독예방과 재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.
- 이에 최근 개정된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반영하여 마약류 중독 예방과 치료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시장은 마약류 중독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마약류 중독에 대한 예방·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함(안 제1조).
- 나. 마약류 중독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·교육·연구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(안 제3조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과제번호: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제1항”을 “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”로, “관한 사항”을 “관한 사항 및 마약류 중독에 대한 예방·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”으로 한다.

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시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·교육·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 번호

2023101100000024

## 비대상사유서

요청인 : 이희원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  
이정수 팀장  
손제승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11.

회신일 : 2023.10.13.

내용문의 : 02-2180-7954

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

### 목 차

1. 판단 근거
2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 
재정분석담당관  
Seoul Metropolitan Council

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(시장의 책무)제3항을 신설한 개정안으로 관련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 확인결과 기추진 중이므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주 무 관	손제승

☎ 02-2180-7954  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**

[붙임] 2023년 서울시 유해약물 안전관리

사업근거

-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(국가 등의 책임)
-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(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교육)
-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(몰수마약류의 처분방법 등)
- 청소년 보호법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및 제48조(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)
-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
-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

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23. 1. ~ 12.(연례반복)
- 수행방법 : 사업수행 단체 공모를 통해 선정,운영
- 사업대상 : 기소유예자, **마약류중독** 고위험군 등 서울시민
- 사업내용
  -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: **교육 및 홍보**
  - 중독자 재활 및 재발방지 : 조건부 기소유예자 교육

향후 기대효과

-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보호**
- 유해약물 등 오남용 예방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조직사회 구성에 기여
- 청소년의 안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

자료 : 2023년 서울시 시민건강국 사업설명서